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

정 혜 민 변호사 (hmj2557@cgs.or.kr)

- ▶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(대안)은 국회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
- ▶ 이번 법안은 기존에 제출된 법안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제2금융권에도 확대 도입하고,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
- ▶ 동 법안이 금융업권간의 지배구조 규제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의 개정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

대안의 제안 경위 및 주요 경과

-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
 - 이에 따라,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대안의 제안 경위임
- 지난 2012년 8월 30일에 최초 발의(김기식의원 대표발의)된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은 이후 수차례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었고, 올해 4월 28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, 같은 달 30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
 -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, 5월 임시국회 통과를 예정으로 하고 있음

법안의 주요 내용

-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(안 제32조)
 - 일정 기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최대주주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,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
 -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, 그 최대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최다출자자를 도출함

- 그동안 은행, 저축은행 등에만 도입되었던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를 보험사, 증권사, 카드사 등의 제2금융권에도 확대함
 - 대주주 적격성 미충족시 시정명령 후 의결권 제한 등의 단계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
 - 은행법과 같이 주식매각명령을 내리는 조치를 포함시키는 야당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
 -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시 위반 여부가 심사대상이 되는 법령으로는 공정거래법, 조세범처벌법, 금융관련법으로 한정하고 있음
-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절차 마련(안 제2조 제2호·제5호 및 제8조)
-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·회장·부회장·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인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하여도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함
 - 전략기획·재무관리 등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 하도록 함
-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임원 후보 추천절차 개선(안 제6조 및 제16조)
- 사외이사의 선임제한 및 임기제한 규정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함
 - 최근 3년 이내에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 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
 -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재직하였거나, 계열사와의 합산 재직기간이 9년 이상인 경우 사외 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
 -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,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
 - 동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
 - 동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함
-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 권한 강화(안 제12조 및 제14조)
-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며,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융업권별로 상이한 이사회 사외이사 비율을 강화하고자 함
 - 이사회 심의·의결 권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
 -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,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이사회 심의 의결 권한을 명시하여 이사회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

□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마련 및 공시(안 제14조)

-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,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함
 -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, 금융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보호 및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고자 함

□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개선(안 제19조)

-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감사위원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,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 3%초과 보유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

□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 개선(안 제21조 및 제22조)

- 금융회사의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적시에 인식·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,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함
-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등을 심의·의결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,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와 연동시키되,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(移延)하여 지급하도록 함

〈표 12〉 법안의 주요 수정·보완사항

	기준에 제출된 법률안	정무위 통과 대안
사외이사 임기제한	-	6년이상 재직, 계열사 합산 9년 재직일 경우 선임제한(신설)
이사회 의장의 선임	-	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 선임, 선임사외이사 도입(신설)
임원추천위원회	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	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변경)
준법감시인 자격요건	금융관련경력 5년이상	금융관련경력 7년이상(변경) ¹¹⁾
	-	기간제 근로자 등의 선임제한(신설)
대주주 적격성	-	제2금융업권을 포함하는 대주주 건전성 유지조항(신설)
소수주주권 행사요건	주주제안권-6개월이상 보유, 1만분의 50 주주대표소송-6개월이상 보유, 10만분의 5	주주제안권-6개월이상 보유, 1만분의 10 주주대표소송-6개월이상 보유, 10만분의 1(요건완화)
이행강제금	-	주식처분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(신설)
벌칙	-	의무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조항(신설)

11) 위험관리 책임자의 자격요건도 동일하게 변경됨

시사점

- 위에서 살펴보았듯이,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는 금융업 권간의 지배구조 규제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음
 - 그러나 적격성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 1인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,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주, 주요주주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비판도 존재함¹²⁾
 - 적격성 심사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, 심사대상의 범위를 특수관계인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

-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시행 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다수 있어왔으나,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모범규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임
 - 그러나 현재 통과를 앞두고 있는 법안에는 일부 모범규준과 상이한 내용이 규정되어, 법률안 통과 후에는 모범규준 개정 등의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
 - 예를 들어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및 대주주 건전성 유지에 관한 내용은 모범규준에 없음
 - 사외이사의 임기제한에 관하여도 모범규준 상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에 한하고 있음
 - 후속 조치를 통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과 모범규준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, 금융업계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보임

12) 경제개혁연대, 2015.4.29, “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의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논평”, 보도자료